



김해시복지재단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합성초등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 책임성, 주체성 등 자원 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2조(합의정신)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범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2.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
3. 대외홍보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

제4조(비밀보호)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신의성실)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

제7조(발효, 유효기간, 종료) 협력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

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복지재단

협약서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합성초등학교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

2017년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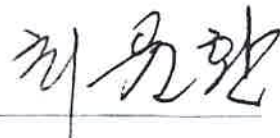
구산사회복지관

관장 조재판



김해합성초등학교

교장 최윤환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동광초등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 책임성, 주체성 등 자원 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합의정신)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범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2.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 - 자원봉사동아리 구성과 운영
3. 대외홍보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

제4조(비밀보호)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신의성실)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

제7조(발효, 유효기간, 종료) 협력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

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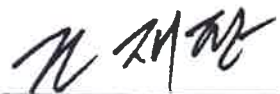
2017년 4월 5일

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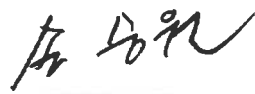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동광초등학교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

2017년 4월 5일

구산사회복지관
관장 조재판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장 손승원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삼성초등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 책임성, 주체성 등 자원 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합의정신)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범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2.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 - 자원봉사동아리 구성과 운영
3. 대외홍보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

제4조(비밀보호)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신의성실)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

제7조(발효, 유효기간, 종료) 협력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

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4월 11일

협약서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삼성초등학교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

2017년 4월 11일

구산사회복지관
관장 조재판

김해삼성초등학교
교장 배판곤



